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31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2. 12.
- 3) 회 부 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군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성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상담·법률조언·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42조의2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2조의2(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제41조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u> <u>2.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소속 공무원</u> <u>3.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u>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생략)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u>

<신 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무 종사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제43조의2(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성(性)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상담, 법률조언,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 현행 군내 성범죄 대응체계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예방대응센터 등 전담 조직을 지정¹⁾하고, 사건 발생 시 신고²⁾·보고³⁾ 절차에 따라 상담 지원, 의료지원, 법률조언, 인사조치⁴⁾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부대관리훈령」 제2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
- 제248조(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부서 지정·운용)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와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부서(이하 “성고충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용한다.
 1. 국방부 :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2.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3. 각 급 부대 : 인사부서 등
- 2) 「부대관리훈령」 제245조(피해자의 조치)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49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요청
 2.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및 행위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경고
 3.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신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사건조사 신청 또는 신고 가능)
- 3) 「부대관리훈령」 제249조(보고) ①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타인에게 듣는 등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제242조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양성평등계선 보고 외에 상급자(상급부대) 보고 또는 수사기관 등 신고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성폭력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양성평등계선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을 접수하였을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부대관리훈령」 제249조의2(상담 및 지원) 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49조의 보고를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 신청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법률조언·인사조치·의료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 조직은 위계성과 폐쇄성이 강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성관련 피해 발생 시 신고 지연이나 사건 은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현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은 행정규칙인 「부대관리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규칙인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성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와 지원 체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내 성범죄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제도 시행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제도 운영 방식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군 내부에는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에 해당하며, 성고충 전문상담관 운영,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설치, 피해자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관련 제도 역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① 안 제42조의2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는 종사자 개인이 아닌 계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므로, 법적 책임 및 역할의 주체를 ‘종사자’가 아닌 ‘전담조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 안 제43조는 피해자 외 제3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신고의무의 주체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는 현재 국방부 훈령(부대관리 훈령)에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③ 피해자 지원범위에 실무상 피해자의 수요가 높은 ‘인사조치 요청’ 권한을 추가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